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90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서울연구원
직원 자녀(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서

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련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중이며,

다. 공모를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사업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2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 추진 필요성

- 아동 보육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하며 책임경영과 안전사고 대비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 ('24.1.1.~'26.12.31.)
- 위탁업무
 -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재산, 시설, 장비 등 위탁 재산관리
 - 기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필요사항
- '24년 예산(안) : 233,472천원(보육료 수입 별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라.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쭉쭉어린이집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 규모 : 지상1층, 연면적 399.45㎡
- 인가일 : '08. 4. 28.



<어린이집 전경>



<실외놀이터>

마. 위탁운영 개요

- 정·현원 : 정원 36명, 현원 31명('23년 5월 기준)
- 교 직 원 : 총 9명(원장 1, 정교사 4, 보조교사 3, 조리사 1)
- 입소아동 : 만1~만5세 영유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인재기획과-3480, '23. 3. 24.)
- 2023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작성자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행정7급 이기연(☎ 02-3488-2038)